



실업 보험 심리 공청회 및 항소에 사용되는 용어

연기(Adjournment): 심리 공청회가 허용된 시간 이내에 완료될 수 없어서 다른 날로 일정이 변경되는 것.

행정법 판사(Administrative Law Judge): 실업 보험 심리 공청회를 진행하는 사람. 행정법 판사는 실업 보험 급여의 초기 결정을 인정할지 기각할지 또는 수정할지를 판결합니다.

인정함(Affirmed): 심리 공청회 행정법 판사의 판결이 정확하다는 실업 보험 항소위원회의 결론.

항소(Appeal): 행정법 판사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당사자가 이용하는 법적 절차. 실업 보험 항소위원회는 한 가지 이상의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. 한 명 이상의 실업 보험 항소위원회 위원이 항소 결정에 서명합니다.

항소 법원(Appellate Division): 뉴욕주 법원 시스템의 일부. 실업 보험 항소위원회로부터 불리한 결정을 받게 된 당사자는 항소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. 뉴욕에는 네 곳의 항소 법원이 있습니다. 이들은 서로 다른 지역("부(Department)"라고 칭함)를 담당합니다. 실업 보험 항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모든 항소는 항소 법원 제3부로 전달됩니다.

출두(Appearance): 당사자가 심리 공청회에 참여하는 것. 당사자는 증언, 상대방의 증인에게 질문, 증거로 제출된 문서 검토 및 최후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.

재개 신청(Application to Reopen): 한 당사자가 새로운 심리 공청회를 요청하거나 실업 보험 항소위원회의 결정을 재개하도록 요청함.

중재(Arbitration): 두 당사자 간 분쟁을 해결하는 심리 공청회의 유형. 중재는 중재인으로 알려진 행정심판관(Independent Hearing Officer)이 담당합니다. 중재 결정은 행정법 판사 또는 위원회가 결정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자주 고려됩니다.

청구(Claim): 실직자가 실업 보험 급여를 요청하는 데 이용하는 절차. 전화 또는 노동부 웹사이트를 통해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청구인(Claimant): 직장을 잃어서 실업 보험 급여를 신청한 사람.

최후 진술(Closing Statement): 각 당사자가 심리 공청회 막바지에 하게 되는 해명. 최후 진술에는 해당 당사자가 유리한 판결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명시합니다.

쟁점호(collateral estoppel): 중재인의 사실 확정에 주어지는 효력. 상황에 따라, 행정법 판사는 중재인의 사실 확정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 확정을 할 수 없습니다.

근로 감독관(Commissioner of Labor): 노동부 담당자. 근로 감독관에게는 실업 보험법을 비롯해 노동법의 모든 조항이 적절히 수행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. 근로 감독관은 뉴욕주 주지사가 임명합니다.

근로자 대표 위원(Commissioner of Labor Representative): 근로 감독관을 대신해 심리 공청회에 출두할 수 있는 노동부 직원. 근로자 대표 위원은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증인에게 반대 심문을 할 수 있으며 노동부에서 제시한 초기 결정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를 담은 최후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심문(Cross-Examination): 당사자가 또 다른 당사자 혹은 다른 당사자의 증인에게 질문하는 경우를 뜻함. 예를 들어, 청구인은 고용주 또는 근로 감독관을 대신해 출두한 모든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. 고용주는 청구인 또는 근로 감독관을 대신해 출두한 청구인 및 모든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. 근로자 대표 위원은 모든 당사자 및 이들의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.

결석(Default): 심리 공청회를 요청한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를 뜻함. 당사자가 변호사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증인이 없거나 문서를 소지하지 않은 이유로 심리 공청회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.

판결(Decision): 심리 공청회 후 행정법 판사가 서명하여 발급한 합법적 문서 또는 항소 후에 한 명 이상의 실업 보험 항소위원회 위원이 서명하여 발급한 합법적 문서. 판결에는 노동부의 초기 결정을 인정할지 기각할지 수정할지를 명시합니다. 판결에는 절차상의 이력, 사실 확정 및 사실과 법을 통한 분석이 포함됩니다.

직접 증언(Direct Testimony): 각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증인이 행정법 판사 또는 당사자 대리인의 심문에 대한 답변으로 심리 공청회에서 말한 진술.

정당한 법적 절차(Due Process): 모든 당사자가 공정한 심리 공청회를 거치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. 미국 수정 헌법 제5조 및 제14조에서는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을 사용해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을 보장합니다.

증거(Evidence): 심리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증언이나 증거물. 행정법 판사가 사실이라고 믿는 증거는 한쪽 당사자 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판결하는 데 사용됩니다.

증거물(Exhibits): 문서, 미디어 또는 기타 물리적인 물건 형태의 증거.

고용주(Employer): 기업, 2명 이상의 사람 간 파트너십, 소기업, 개인 사업주 또는 청구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소유주.

심문 공청회(Hearing): 행정법 판사에게 증거가 제시되는 절차. 출두하는 당사자는 판사, 각 당사자의 대표자 및 상대방에게 심문을 받습니다. 이들은 상대방이 부른 증인에게도 심문할 수 있습니다. 해당 판사는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합니다. 해당 판사는 노동부의 초기 결정을 인정할지 기각할지 수정할지 판결합니다.

전문(Hearsay): 누군가가 사건에 대해 읽거나 들었지만 실제로 보거나 들은 것은 아닌 증거.

초기 결정(Initial Determination): 구체적인 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업 보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노동부 발급 문서.

노동부 대리인(Labor Services Representative): 청구인에게 실업 보험 급여가 허용될지 거부될지를 노동부를 대신해 판단하는 직원. 노동부 대리인은 심리 공청회에서 청구인 또는 고용주와 진행한 전화 인터뷰 및 이메일 교환 내용에 관해 증언할 수 있습니다.

수정함(Modified): 최초 결정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부분적으로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행정법 판사의 판결. 행정법 판사의 판결이 부분적으로 옳으므로 일부를 인정하고 일부를 부인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실업 보험 항소위원회의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.

기각함(Overruled): 최초 결정이 잘못되었으므로 효력을 지속하지 않아야 한다는 행정법 판사의 판결.

당사자(Party): 심문 공청회 결과의 영향을 받을 사람 또는 사업체. 실업 보험 심리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는 세 당사자는 청구인, 고용주 및 근로 감독관입니다.

환송(Remand): 다른 심리 공청회를 위해 공청회의 행정법 판사에게 사건을 환송하기로 하는 실업 보험 항소위원회 위원의 결정.

대리인(Representative): 심리 공청회에서 당사자를 대신해 행정법 판사에게 진술하고 증인에게 질문하는 사람. 청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,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고용주는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공적인 문제에서 고용주를 대표하는 회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고용주는 인적 자원부 직원 또는 인사 부서 직원 등 자신의 직원 중 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.

부인함(Reversed): 행정법 판사의 판결이 옳지 않다는 실업 보험 항소위원회의 위원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결론.

격리 조치(Sequester): 증인 여러 명을 서로 격리하는 조치. 당사자가 두 명 이상의 증인을 제시하는 경우, 심문 공청회가 진행되는 곳에는 현재 증언하는 증인만 있을 수 있습니다. 다른 증인은 증언 시간이 될 때까지 대기실로 보내지게 됩니다. 여러 증인이 서로의 증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격리하는 것입니다.

소환장(Subpoena): 심리 공청회의 당사자가 아닌 개인 또는 사업체에 심리 공청회를 위한 문서를 제시하도록 지시하는 법률 문서. 심리 공청회에서 특정인이 증언하도록 지시하는 문서일 수도 있습니다. 이 소환장은 행정법 판사가 서명합니다.

인정함(Sustained): 최초 결정이 정확하여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행정법 판사의 판결.

증언(Testimony): 선서 또는 선서 진술서하에서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증인이 하는 진술.

실업 보험 항소위원회(Unemployment Insurance Appeal Board): 뉴욕주 주지사가 임명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 위원회. 해당 위원회는 행정법 판사의 판결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합니다.

증인(Witness): 심리 공청회에서 증언하는 당사자 이외의 사람.